

2019년도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2. 5.(목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7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557건(안건번호 제2019-158724호~16021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58724호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58725호~15873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60211호는 보호원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하여 심의 요청된 건으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53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7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회의록 7쪽, 8쪽의 OSP명, 10쪽의 기업명, 14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이의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OSP명, 기업명, 밴드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정현순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19-158724호~160211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4,557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8724호는 해당 저작물의 국내 배급사 직원인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걸즈 앤 판처 최종장 제1화(2017)'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과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약 47분 정도의 분량이며, 우리말 자막을 포함하고 있음. 위 영화는 2017. 12. 9. 일본에서 개봉하였음.

저작권법 제133조의3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정보'라는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시정권고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과 같이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제공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고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해 주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 또는 토렌트 파일의 제공은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은 토렌트 파일과 함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막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이 행위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함.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은 2019. 6. 위 영화에 관한 International Distribution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음. 게시자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약 492개의 토렌트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토렌트파일은 문제가 있다고 정리를 한 것인지?
- 정현순 전문위원 : 기존 심의위원회는 토렌트파일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음.
- A 위원 : 링크 정보에 대해 불법성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D 위원 : 유럽은 링크를 타고 가서 불법성이 있을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로 보고 있고, 미국은 해당 조문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링크를 무조건 불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해당 안건은 권리자에 준한 지위에 있는 자가 직접 신고한 사안임. 토렌트파일 및 자막파일 게시물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상 합법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생각함.
- B 위원 :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제공하는 사이트들

이 전부 외국에 있다고 한다면?

- 정현순 전문위원 : 제공자들이 해외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보호원은 토렌트파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임.
- B 위원 : 토렌트파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지 의문임.
- 정현순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등'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렌트파일이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는 있음.
- B 위원 : 우리나라에 없는 정보나 해외의 정보를 단순히 링크를 걸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국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었는데 링크는 국내에서 하였음. 해당 판결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음. 다만 그 링크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된 것임.
- A 위원 :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 PC를 상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글 정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해당 안건은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임. 다만 토렌트파일을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 A 위원 : 전문위원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막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검토보고 하였는데, 자막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추정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예컨대, 자막파일 확인을 통해 DVD 추출이 확실하다면 불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권리자의 허락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굳이 추정되는 내용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자막파일에 대한 추정 내용은 보고 시 주의하도록 하겠음.
- B 위원 : 토렌트의 경우 씨드(Seed)에서 국내 IP를 가진 자가 발견된다면 확실하게 전송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저촉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조심할 필요성이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은 씨드(Seed)를 제재하는 것이 아님. 토렌트파일 게시자를 경고하는 것이고, 토렌트파일을 삭제하는 것임. 앞서 언급한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음. 다만 그 링크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된 것임.
- B 위원 : 최소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우리나라에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채증할 때 토렌트 파일을 토렌트 프로

그램에 입력하면 저작물 파일이 국내로 전송되어 오게 됨을 확인하게 됨.

- B 위원 : 보호원의 채증 정보로는 부족함. 제3자이어야 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임.
- B 위원 :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저작물에 한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권은 국제협약에 따라 대다수 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저작물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임.
- B 위원 : 예컨대, 내가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퍼뜨리고 싶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라면 보호원에서 굳이 제재할 필요는 없음.
- A 위원 : 그러나 해당 안건은 권리자에 준한 지위의 자가 신고한 건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보호원의 제도는 권리자가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임. 보호원은 권리자의 의사를 사실상 추정하여 시정권고 하고 있음. 상업적 저작물이라면 일반인이 업로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함. 물론 예외적으로 권리자 중 소수는 저작물이 퍼뜨려지길 원할 수 있으나 해당 부분까지는 보호원이 알 수 없음. 보호원은 함

법 시장으로 저작물 수요가 흘러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취지도 있음. 개별 저작권자의 의사에 너무 좌우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이후 토렌트파일에 대한 안전은 IP address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겠음.

- D 위원 : 실질적으로 시정권고를 통해서 OSP가 불법복제물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함. 다만 우리나라에서 권리자가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원치 않게 삭제되었을 때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시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위원님의 말씀처럼 보호원의 제도는 권리자만 위한 제도는 아님. 이용자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58724호 토렌트파일 및 자막파일 게시물을 제공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8724호는 불법복제물을 토렌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함.

- D 위원 : 토렌트파일 및 자막파일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음. 토렌트 마그넷 주소 또는 토렌트파일의 제공은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다만 번역 자막의 경우 불법성 여부를 일방 추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872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872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만화를 캡처한 jpg.파일을 약 5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8726호~15873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만화를 캡처한 다수의 jpg.파일을 판매한 사안임.
- D 위원 : 만화를 스캔하여 압축(Zip)파일을 만든 것인지?
- 정현순 전문위원 :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직접 스캔하여 압축(Zip)파일을 만든 것일 수도 있고, BOOK 스캔 서비스를 이용하여 압축(Zip)파일을 만든 것일 수도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58725호~158732호 웹하드 사이트의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8725호~15873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문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로 가결의견임.
- D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8725호~15873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0211호는 안전번호 제2019-160210호와 중복하여 심의 요청된 사안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60211호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안전이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0211호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음.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0211호는 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8733호~160210호는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방송 '셜드 : XX 강력반(2002)'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58918호는 '셜드 : XX 강력반 시즌1'을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미국 FX 채널에서 2002. 3. 12.부터 2002. 6. 4.까지 방영된 총 13부작 미국 시즌제 드라마임.
(영화 '엔젤 해즈 폴른 (2018)'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59326호는 2019. 11. 13. 개봉한 미국 '폴른 시리즈'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영화 '아이리시맨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59327호는 2019. 11. 20.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방송 '어새신즈 프라이드(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9428호는 일본 TV만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일본 AT-X 채널에서 2019. 10. 10.부터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영 중이고, 우리나라 애니플러스 채널에서는 2019. 10. 12. 부터 토요일 오후 11시에 방영 중임.

(영화 '겨울왕국 2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9724호는 2019. 11. 21.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도박사이트 광고가 게재되어 있음.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임.

- A 위원 : 캡처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자막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상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캡처본이 아닌 캠버전임. 화질이 떨어짐.

- D 위원 : 우리나라는 극장에서 영화 촬영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지?

- A 위원 : 극장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는 하나 따로 단속하지는 않음.

- 정현순 전문위원 : (SW 'Rix 멜랑츨리(B,M,L)'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9861호는 유료 폰트를 네이버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폰트는 정품 약 253,000원에 판매 중임.

(SW 'Yoon 인어공주'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9872호는 유료 폰트를 네이버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폰트가 포함된 상품은 정품 약 88,000원에 판매 중임.

- D 위원 : 폰트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가 된 이후부터는 창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음.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폰트별로 창작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예컨대, 어떤 폰트는 같은 폰트임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다르게 하여 유료, 무료를 나누는 경우가 있음. 일반 이용자는 혼동할 수밖에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데드카피인 안전번호 제2019-158733호~16021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8733호~16021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게임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해당 안전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웹하드 등의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D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8733호~16021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0211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158724~16021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불법복제물등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12.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